

러시아 경제위기 상황 및 시장평가

(15. 2. 4)

해외경제연구소

I

경제위기 상황

- (서방제재) EU 對러 제재 6개월 연장, 미국 UFSA 발효
 - (EU)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15년 3월 만료예정이던 對러 제재를 '15년 9월로 6개월 연장 ('15. 1. 29자 발표) (<참고자료 1>)
 - EU 외무장관회의(2.9) 및 정상회의(2.12)를 통해 對러 추가제재 조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UFSA) 발효로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능성 ('14. 12. 19자 시행) (<참고자료 2>)

- (경제상황) 성장악화 및 물가급등 등 우려
 - (성장/물가) '15. 1/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 물가 10% 상회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에 따른 내수위축, 고금리에 따른 기업 차입여력 악화 등으로 '15. 1/4분기 $\Delta 2\%$ 경제성장률 추정
 - 루블화 가치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15. 1/4분기 13% 수준의 인플레이션 추정
 - (재정/외환) '15년 재정수지 적자전환 및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국제유가 하락 및 서방의 對러 제재로 재정수입이 급감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15년 $\Delta 1.1\%$ 적자 추정
 - 2014. 12월말 외환보유액은 3,789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6개월간 약 1,000억 달러 축소 (1. 30, 기준금리 인하: 17% \rightarrow 15%)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4					2015 ^f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경제성장률	1.1	1.0	0.7	△ 0.2	0.2	△ 2.0	△ 3.5
인플레이션	6.4	7.6	7.7	9.1	8.0	13.0	11.8
재정수지/GDP	0.6	2.6	2.2	△ 7.9	△ 0.9	-	△ 1.1
기준금리	7.0	7.5	8.0	17.0	5.5 → 17.0	15.0	-
외환보유액	4,840	4,758	4,568	3,789	△ 1,231	-	3,339

II 신용등급 및 시장동향

- (신용등급) OECD, S&P 등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 (OECD/당행) OECD 3 → 4등급 하락 (71차 회의, '15. 1. 28), 당행 C1 → C2 등급 하락 ('14. 12. 30)
 - (S&P/Moody's) S&P BBB- → BB+ 등급 하락 ('15. 1. 26), Moody's Baa2 → Baa3 등급 하락 ('15. 1. 16)
 - S&P는 러시아의 경기 위축, 자본 유출, 외환·금융통제력 저하 등을 이유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BB+/Negative로 등급 하향조정
- (금융시장) 루블화 환율변동 움직임 (57.80 ~ 69.47)
 - (환율) 루블화 환율은 1월 평균 미달러당 64.33루블로, 최고 69.47루블(1. 30)까지 상승 ('14. 7월말 이후 48.6% 하락)
 - (국채/CDS)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월말 13.91%로 '14년말 14.09%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5년물 CDS 프리미엄은 '14년말 476.09bp를 기록한 이후 '15. 1월말 628.39bp까지 상승
- (유가) 배럴당 50달러 내외에서 보합세
 - (브렌트유) 1월 중 평균 유가는 배럴당 49.76달러 수준으로 50달러 내외에서 등락 (46.59 ~ 56.42)

<러시아 신용등급 및 시장동향 지표 추이>

구 분		2014		2015
		11월	12월	1월
신용등급	OECD	3등급	3등급	4등급
	S&P	BBB-	BBB-	BB+
	Moody's	Baa2	Baa2	Baa3
환율 (루블 / 달러)		46.30	56.67	64.33
국채수익률(10년물, %)		14.09	13.91	13.91
국제유가(달러/배럴)		79.63	63.27	49.76

<참고사항>

▲ 우크라이나 정부-반군 간 평화협상 결렬 (벨로루시 민스크, 1.31)

- 2015년 1월 31일,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러시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반군간 평화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성과없이 종료
-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간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등 2014년 9월 휴전협정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결렬

▲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마리우폴, 포격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1.24)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간 격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마리우폴 지역이 마리우폴 10km² 외곽 반군 측 거점에서 날아온 포격으로 민간인 30명 사망, 95명 부상 등 대규모 사상자 발생
- 동 인명피해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반군과 반군에 무기, 훈련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고 비상사태 선포
- 미국 역시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시사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

확 인 자	수석조사역 조양현
작 성 자	조 사 역 김세진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Ukraine

- 29/01/2015
- 19:45
- Press release
- 433/15
-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relations

Foreign Affairs Council meeting Brussels, 29 January 2015

The Council adop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indiscriminate shelling of the residential areas, especially in Mariupol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fighting in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of Ukraine. The Council is shocked by the high number of casualties. It notes evidence of continued and growing support given to the separatists by Russia, which underlines Russia's responsibility. The Council expects Russia to exert its influence and to induce the separatists, without delay to stop their hostile actions and live up fully to their commitments under the Minsk agreements, including notably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the withdrawal of heavy weapons from the security zone along the line of contact foreseen in the Minsk Memorandum, as urgent first steps, which the Foreign Ministers of France, Germany, Russia and Ukraine called for in the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ir talks in Berlin on 21 January. Recalling the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f 30 August, 24 October and 18 December 2014, the Council calls on all sides to fully assume their responsibility and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under the Minsk agreements. It calls in particular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condemn the separatists' actions. Public statements distorting the reality on the ground, inciting to further violence, as well as publicly humiliating hostages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will not lead to the badly needed de-escalation. All signatories of the Minsk agreements should convene as a matter of urgenc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rilateral Contact Group to this effect.

2. The European Union will actively support all diplomatic efforts conducive to creating a new political impetus, notably those currently ongoing under OSCE auspices, and will engage further as necessary. These efforts should be undertaken in good faith and lead to meaningful results. Full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 as the basis for a sustainable political solution to the conflict, respecting Ukraine's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must remain the focus of such talks. Progress must be made on the withdrawal of illegal and foreign armed groups, military equipment, fighters and mercenaries, freeing of all hostages, securing the Ukrainian-Russian border with permanent monitoring by the OSCE, as well as early local elections in parts of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in the framework of the Ukrainian law on interim self-governance and an inclusive national dialogue, notably on issues such as constitutional reform and decentralisation.

3. In view of the worsening situation the Council agrees to exten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EU law, the restrictive measures targeting persons and entities for threatening or undermining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dopted in March 2014 and subsequently updated, until September 2015. Moreover, it calls on the High Representative and the Commission to present within a week a proposal on additional listings for decision at the FAC on February 9, 2015. The Council will continue to closely follow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nd the current diplomatic efforts, and asks that further preparatory work by the Commission Services and the EEAS be undertaken on any appropriate action, aiming at ensuring a swift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
4. The EU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international partners, including the OSCE and the Council of Europe. The Council reiterates its appreciation of the OSCE's role, in particular through the presence on the ground and objective reporting of the OSCE Special Monitoring Mission to Ukraine as well as the efforts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Chairperson-in-Office in the Trilateral Contact Group. The Council calls on all parties to ensure free and safe access for the SMM's monito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to all parts of Ukraine, including all parts of the Donetsk and Luhansk Oblasts and areas along the state border with Russia. The Council reiterates its support for the swift expansion of the SMM to its full capacity and the expansion of the mandate of OSCE Observer Mission at the Russian border checkpoints with a view of re-establishing Ukrainian control of its border with Russia.
5. The Council encourages the Ukrainian authorities to swiftly take the intended legal steps enabl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examine the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Ukraine in 2014-2015. The Council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moving forward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Rome Statute by Ukraine, as it has committed to in the Association Agreement.
6. The Council condemns the raid on the premises of the ATR television, which represents the most recent act of persecution and intimidation of the Crimean Tatar community and another attempt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n the peninsula. The Council reiterates its call on all parties to provid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with full, free and unrestricted access to the whole territory of Ukraine, including Crimea and Sevastopol, the illegal annexation of which the EU condemns and will not recognise.
7. The Council tasks the High Representative / Vice President to step up efforts, in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and EU institutions, to further improve strategic communication in support of EU policies and to explore op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communication team to lead these actions. Such efforts should include proactive communication of EU policies, correcting misinformation when it appears, and suppor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dependent media throughout the region.
8. The Council notes with concern recent Russian statements question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downing of flight MH 17. The Council emphasises that this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a fully independent expert team of international experts in full compliance with ICAO rules and regulations, and calls on all parties to fully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9. The Council reiterates its call on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t urges Ukraine to deliver concrete results in key reform areas to reply to the population's aspirations of a democratic and modernised Ukraine, respecting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minorities. These reforms should stabilize the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situation and anchor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by developing a climate suitable for investment, notably in view of a possibl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Ukraine. It welcomes some recent reform steps, including the adoption of the fiscal decentralisation laws. It recalls that a reinvigorated reform process, including the adequate preparation for the future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 발효 : 對러시아 무역 및 금융거래에 대한 영향

지난 해 12월 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이하 UFSA)”에 서명하였습니다. UFSA가 발효됨에 따라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對러시아 제재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던 EU의 Council Regulation No. 833/2014(No. 960/2014 및 No. 1290/2014로 일부 개정) 및 미국의 대통령명령 13662호는 주로 러시아의 특정 개인 및 기업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한 EU 또는 미국 국적의 개인 및 기업, 또는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EU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UFSA의 경우 미국이외의 제3국 금융기관이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對러시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UFSA에 따른 제재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러시아의 태도변화에 따라 추가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적용하기로 결심할 경우 UFSA에 따른 제재는 그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對러시아 거래를 계획하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UFSA에 따른 제재가 시행되는 경우, 예컨대 제3국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내에서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또는 환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기 개설된 대리계좌 또는 환계좌를 유지함에 있어 엄격한 조건(strict condition)을 충족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FSA를 위반한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의 경우 미화 25만 불 또는 문제가 된 거래금액의 2배 가운데 낮은 금액 이하만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사항이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화 1백만 불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연인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지대상이 되는 거래 및 당사자

UFSA 제4조 및 제5(a)조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제재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1) UFSA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 (2) UFSA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 기업이나 개인, (3) 러시아의 주요 방산수출자인 Rosoboronexport 사, 그리고 (4) Gazprom 사(미 행정부에 의해 추후 UFSA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를 상대로 '유의미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대한 '편의를 제공(facilitate)'한 제3국의 금융기관이 UFSA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UFSA에 따라 일반적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러시아 또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Gazprom 사 역시 아직까지 UFSA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Rosoboronexport 사와 거래하지 않는 한 UFSA 제4조 및 제5(a)조에 따른 제재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UFSA 제5(b)조는 특별히 제3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UFSA, 미합중국 대통령령 제13660호, 제13661호, 제13662호,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미합중국 대통령령에 의거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자를 상대로 '유의미한 금융거래(significant financial transaction)'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제3국 금융기관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FSA 제5(b)조에 따른 제재대상자들의 경우 제5(a)조에 따른 제재대상자들과 달리 이미 상당수 특정되어 있고, 해외자산통제국이 '유의미한 금융거래' 및 '편의 제공'이라는 기준을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제13660호, 제13661호, 제13662호, 기타 관련 대통령령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금지된 거래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UFSA에 따른 제재의 소급적용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차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도 소급적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와 거래를 계획하는 국내 기업과 이와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제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UFSA 제5(a)조는 "UFSA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를, 그리고 UFSA 제5(b)조는 "UFSA 제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또는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를 각각 제재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이 UFSA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실령 그러한 거래가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실제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재대상 거래로 취급되어 UFSA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거래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과 이러한 거래에 대해 금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UFSA의 내용을 숙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과 및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